

# 2023년도 제1차(상반기)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) 지정계획 공고

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고용노동부 「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」에 따라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3. 2.

서울특별시장

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3년 제1차(상반기)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) 지정
-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3년간
  - 단, 마을기업·농어촌공동체회사·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
- 지정규모 : 제한없음
- 지원내용
  - 일자리창출·전문인력·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
    - ※ 일자리창출, 전문인력채용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
  -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·노무 컨설팅 지원
- 지정대상 :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·기업
- 지정제한
  -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(공고일)부터 1년간(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) 신청제한
  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 인·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·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  - ‘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‘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’ 지정 신청 불가

-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(예비)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
-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
## 2. 지정요건

### □ 조직형태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(본점)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고, 중앙 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·허가·신고·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

-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,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-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  - \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(어)조합법인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(어)업회사법인 등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·미술관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

### 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
  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  -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
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
  - ※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(실적 기간 : 3개월)
-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이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.
- 단,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**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하며 관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**
  - ※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.
- 사회적목적 실현여부 판단을 위한 판단기준

유형	사회적목적 실현내용	판단기준
일자리 제공형	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	·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일 것 · 취약계층에게 관찮은 일자리 제공
사회서비스 제공형	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	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일 것
지역사회 공헌형	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(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	㉠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(이하 "지역취약계층"이라 한다)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일 것
	㉡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	㉡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
	㉢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케팅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	㉢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
혼합형	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	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일 것
기타 (창의·혁신)형	·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,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- 사업의 실적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유형으로 불인정 ·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어야 함 -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	

※ **관찮은 일자리**: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근무 충족

□ **영업활동을 수행할 것**

- 신청 직전 월이 속한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·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  - ※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, **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**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.
- 단,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
- 사업기반(사업장, 근로자 등)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

□ **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**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.
-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
  - ※ 정관 등은 **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**
-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

〈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〉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(어)조합법인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(어)업회사법인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·미술관
-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
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(단, 보건의료사업은 제외)

□ **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**

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,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)으로 지정하지 않음
  - 적용기준 :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(위반사항 해소 포함)로 판단
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'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필수'

### 3. 심사위원회 심사

#### □ 심사대상

- 자치구 서류심사(요건심사) 및 현장실사 결과 지정요건 충족기업
- 심사대상 기업 개별통보

#### □ 심사위원회 구성

- 10인 내외의 민간전문가, 사회적기업가, 서울고용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

#### □ 심사방법

-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로 진행
  - 신청기업별 기업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브리핑 후 심사위원 질의·응답
  - ※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필요시 서면심사

#### □ 심사기준

-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,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,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, 기업의 지속가능성(재무상태 평가) 등을 「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」을 참고하여 심사

#### □ 심사결과 통보

- '23. 5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자치구 통보 예정

### 4.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

#### □ 준수사항

- 지정요건 유지
-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(지정 후 3개월 이내)
- 기관명, 소재지, 대표자 등 지정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치구청장에게 변경 신청
- 사업보고서 제출(매년 5월말까지)
  - ※ 미제출시 불이익: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, 지정 취소 등
-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

#### □ 지정취소

-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※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,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(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,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)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
  - ※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~500%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
- 기타 지정요건 미유지, 관련 법규 위반시 관계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
-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

## 5. 제출서류

### □ 필수서류

- ① 지정 신청서[서식1]
-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[서식2]
- ③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[서식2-1~5](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만)
  -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“주된 목적”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인지를 고려하여 인정
- ④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(해당기업만 통합시스템 입력)
  -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(4대보험),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, 유급근로자 명부[서식3]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
    - \* 주민등록등본(지정유형이 ‘지역사회공헌형 ㉔’의 경우, 해당하는 취약계층)
-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[서식4]
- ⑥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[서식5]
- ⑦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설립허가증, 대표자 이력서, 임대차 계약서 등
  -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
    - ※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(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 일치하여야 함)
    - ※ 불인정 사례 : (개인사업자, 간이과세자)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, 자활공동체 인정서,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
  - 지부(회)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(회) 정관이나 규약, 지부(회)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

- ⑧ 재무제표(표준재무제표 증명,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, 부가세신고내역, 거래처별 합계표, 납세증명)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기업만 제출,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)  
 ※ 공고일이 '23. 3. 2.(목)이 속하는 달의 직전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하려는 경우, 공고 월의 직전 월('23년 2월)까지 가결산한 재무제표 제출(해당 자료는 '기타서류' 란에 첨부)  
 - 반드시 통합정보 시스템 원클릭서비스(표준재무표 증명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부가세 신고내역, 거래처별 합계표, 납세증명) 제출 동의  
 - 재무제표('23년 2월까지 가결산), 매출실적 등 영업활동 실적자료는 전문가(회계사, 세무사 등)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
- ⑨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(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\* 경우)  
 -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
 ※ 접수 마감일('23.03.22)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
 - 사단·재단법인, 사회적협동조합,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·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을 제출 가능  
 \* 주식회사, 유한회사, 합자조합,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「협동조합기본법」 협동조합, 「민법」 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공증 필요
- ⑩ 마을기업·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(해당기업만 제출)
- ⑪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 
 -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'e-러닝' 메뉴에서 수강  
 - 접수마감일(23. 3.22)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확인증에 한함.  
 \*(예비)사회적기업 필수과정
- ⑫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(해당사항 있을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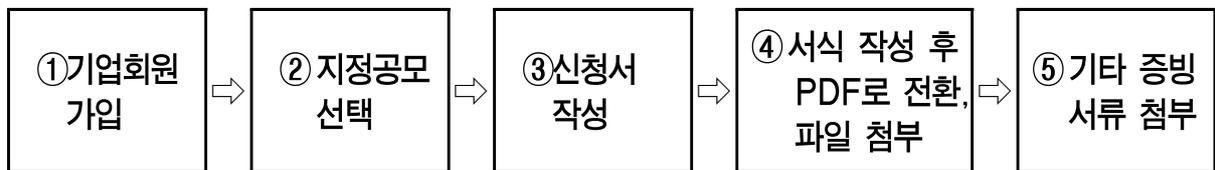
□ 제출 목록 및 제출방법

연번	제출방법	제출서류 번호(위 목록 참고)	비고
1	시스템 직접 입력	①번 서류 ④번 중 유급근로자 명부	시스템 입력
2	첨부파일 작성 후 PDF파일 변환 첨부	①번 등 시스템 직접 입력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일체 ※ PDF파일로 변환하여 구비서류 탭에 파일 첨부 ※ ②, ④번 중 취약계층 확인서류, ⑧번 중 가결산 재무제표, ⑩번 서류는 '기타'란에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업로드	반드시 PDF파일 제출
3	원클릭 서류 조회·동의 후 제출	조회 가능한 모든 서류 조회 후 제출 ※ 조회 불가 시 발급처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개별 업로드	-

※ 통합정보시스템 첨부파일 용량이 최대 20MB로 제한되어 있어 용량 초과시 필수 제출서류 중심으로 업로드하고, 증빙서류 등 추가서류는 해당 자치구에 제출

## 6. 접수기간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'23. 3. 2.(목) ~ 3. 22.(수) 17:00까지 제출
  - ※ 마감일의 접수상황에 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
- 접수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
  - ※ 접수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 불인정
-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(<http://www.seis.or.kr>)
  -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
  -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: 1661-4006



- 신청서류 보완기간 : '23. 3. 23.(목) ~ 3. 24.(금) 17:00까지
  - ※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
  -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기업에게 있음
  -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

## 7. 기타사항

- 해당 자치구에서는 접수기간 내 참여기업들이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[www.seis.or.kr](http://www.seis.or.kr)) 으로 입력·신청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온라인으로 입력된 서류와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는 일치하여야 합니다.
-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,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신청 구비서류는 서류보완 마감일시 [ '23. 3. 24.(금) 17:00 ] 까지 제출한 서류만 인정하며 공고문 상의 지정요건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.
-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.

## 8. 문의사항
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문 의 처					
서울권역지원기관 (사)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☎02-365-0330					
자치구	담당부서	전화번호	자치구	담당부서	전화번호
종로구	일자리경제과	02)2148-2283	마포구	일자리청년과	02)3153-8594
중구	일자리경제과	02)3396-5294	양천구	일자리경제과	02)2084-5454
용산구	일자리정책담당관	02)2199-4533	강서구	일자리정책과	02)2600-5337
성동구	일자리정책과	02)2286-6608	구로구	일자리지원과	02)860-2125
광진구	일자리청년과	02)450-7248	금천구	자치행정과	02)2627-1048
동대문구	일자리청년과	02)2127-4976	영등포구	일자리정책과	02)2670-3962
중랑구	기업지원과	02)2094-1295	동작구	경제정책과	02)820-9614
성북구	지역경제과	02)2241-3896	관악구	일자리벤처과	02)879-5754
강북구	일자리지원과	02)901-2653	서초구	일자리경제과	02)2155-8740
도봉구	자치행정과	02)2091-2223	강남구	일자리정책과	02)3423-5594
노원구	일자리경제과	02)2116-0685	송파구	경제진흥과	02)2147-4922
은평구	사회적경제과	02)351-6893	강동구	일자리정책과	02)3425-5825
서대문구	청년정책과	02)330-1898			

[ 서식 1 ]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60일
------	-----	-----------

##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

① 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	② 대 표 자	
③ 연 락 처 (FAX. )			④ 사업자등록번호	
⑤ 소 재 지				
⑥ 조 직 형 태	1.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민법상 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한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합자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리민간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비자생활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영농·영어조합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·어업회사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법인, 비영리단체 2.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단체 등			
⑦ 지 정 유 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㉠[ ], ㉡[ ], ㉢[ ])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창의·혁신)형			
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(A)	명	취약계층 근로자수(B)		명
		취약계층 고용비율(B/A)		%
⑨ 주된 사업내용				
⑩ 업종				
⑪ 사업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·예술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산림 보전 및 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사 간병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통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

「00000시(도)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00조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업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기초자치단체장 귀하

구비 서류	1.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[서식 2] 3.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서식2-1~2~5, 해당기업만 제출) 4. 유급근로자 명부[서식3](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) ※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(4대보험),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,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5. 사업자등록증명, 재무제표(표준재무제표 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부가세신고내역, 거래처별합계표, 납세증명)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) 6. 공증받은 정관·규약 등 7.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8.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.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(해당기업만 제출) 10.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1.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e-러닝 수강(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)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2.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
-------	---

##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

◆ 기업개요

기업명 (기관명)		대표자	
소재지			
연혁			

◆ 인증요건 충족계획

사회적목적유형 신청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㉠[ ], ㉡[ ], ㉢[ ])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창의·혁신)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
조직형태	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-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
근로자 고용계획	유급근로자 고용 계획(정규직 00명 등)
의사결정구조	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- 이사회(운영위원회) 등 운영 계획
정규약관	정관(규약) 제·개정 계획 - 의사결정구조,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(개정) 계획

◆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(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)

1. 사업 목적 (사업의 필요성)	1-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(소셜미션) :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(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)  1-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(사업필요성)
2. 사업 내용 (영업수입 확보방안)	2-1 구체적 사업내용 2-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-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-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-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

◆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(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)

3. 사업 역량	<p>3-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: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</p> <p>3-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: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</p> <p>3-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: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: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</p>
4. 사업 목표	<p>4-1 연차별 매출규모</p> <p>4-2 고용창출 계획</p> <p>4-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</p> <p>4-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</p>

◆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1년차	<p>(예시)</p> <p>- 사업장(사업시설) 확보 및 인력 확충</p>
2년차	<p>(예시)</p> <p>-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</p> <p>- 사업장(지점) 추가 확보</p> <p>-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</p>
3년차	<p>(예시)</p> <p>-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</p>

◆ 기타 추진계획

연계기업,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

\*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(필요시 별지작성)

##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				
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	전체 서비스 수혜자(A)		취약계층 수혜자(B)		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(B/A)	
	명		명		%	
취약계층 수혜자	일련번호	이름	생년월일	구분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)		
				※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		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신청기관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### 기초자치단체장 귀하

구비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,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</li> <li>2. 장애인: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</li> <li>3.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/ol>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##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				
근로자	전체근로자(A)		취약계층 근로자(B)		취약계층 근로자 비율(B/A)	
	명		명		%	
취약계층 근로자	일련번호	이름	생년월일	구분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)		
				※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		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년       월       일

신청기관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기초자치단체장 귀하

구비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,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</li> <li>2. 장애인: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</li> <li>3.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/ol>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##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						
사업지역		( )시/도 ( )시/군/구						
지역 사회 공헌형 ㉓	일자리 제공	전체 근로자(A)			지역취약계층 근로자(B)	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(B/A)		
		명			명	%		
	사회서비스 제공	전체 서비스 수혜자(A)			지역취약계층 수혜자(B)	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(B/A)		
		명			명	%		
	지역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	구분	연번	성명	생년월일	해당 취약계층		
		근 로 자						
수 혜 자								
지역자원 연계현황		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 활용						
		지역주민의 소득·일자리 증대						
지역 사회 공헌형 ㉔	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	해당분야 수입(A)	전체 수입(B)	A/B	해당분야 지출(C)	전체 지출(D)	C/D	
				%			%	
지역 사회 공헌형 ㉕	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	해당분야 수입(A)	전체 수입(B)	A/B	해당분야 지출(C)	전체 지출(D)	C/D	
				%			%	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3호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3호다  
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기관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기초자치단체장 귀하

구비서류	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※ 비고

1. “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”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
[ 서식 2-4 ]

##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					
일자리 제공	전체 근로자(A)	취약계층 근로자(B)			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(B/A)	
	명	명			%	
사회서비스 제공	전체 서비스 수혜자(A)	취약계층 수혜자(B)			취약계층 수혜자 비율(B/A)	
	명	명			%	
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	일련번호	이름	생년월일	구분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)		
				※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		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년          월          일

신청기관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### 기초자치단체장 귀하

구비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,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</li> <li>2. 장애인: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</li> <li>3.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/ol>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)

기타(창의·혁신)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

신청기업명 (신청기관명)	
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(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)	-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 - 관련 사업 추진 실적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월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일

신청기관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기초자치단체장 귀하

구비서류	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



## 노동관계법령의 범위

1. 「근로기준법」
2. 「최저임금법」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4. 「임금채권보장법」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
6.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7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
8.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9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
10. 「근로복지기본법」
11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
12. 「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13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14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15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16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)
17.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
18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)
19.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)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·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, 사업자등록상태조회, 예비사회적기업 실적·성과 평가 등에 활용
-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(휴대폰)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- 개인정보의 제공: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

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성 명	
주민등록번호	-